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06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1907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병원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재산분) 9,973,950원, 주민세(종업원분) 41,568,860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64,936,300원, 합계 116,47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06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시는 치매 및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산 161-5에 원고를 설립하고, 2005. 1. 24. 피고로부터 '명칭: 부산시노인전문제1병원, 종별: 요양병원, 진료과목: 신경과, 정신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규모: 입원실 26실, 병상 200병상'으로 하여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redacted]시는 2005. 2.경 의료법인 [redacted](이하 '[redacted]'이라 한다)과 [redacted]병원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고, 2014. 2. 1. 재차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우산의료재단이 원고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4.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 6. 10. 원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총 부과세액(원)
주민세(재산분)	2011년~2015년	9,973,950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11년~2013년	64,936,300
주민세(종업원분)	2014년~2015년	41,568,860
합계		116,479,110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06

원고는 [redacted]시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원고는 이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믿고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란 소송법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 부산광역시의 위탁에 따라 우산의료재단이 관리·운영하는 영조물로서 의료시설의 명칭에 불과할 뿐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이 사건 처분 역시 권리능력이 없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이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06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김용환

판사 엄지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06

별지

관계 법령 등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06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인으로 병원급·요양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3.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에는 위탁사무수행을 위한 기구·정원·근무체제·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등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병원을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운영)

①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